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

제정 2012. 09. 1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-52호 개정 2013. 11. 22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-19호 개정 2014. 07. 1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-08호 개정 2015. 07. 3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-08호 개정 2015. 09. 23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-21호 개정 2016. 11. 0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-10호 개정 2017. 11. 06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-11호 개정 2018. 10. 3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-13호 개정 2019. 10. 31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-11호 개정 2020. 11. 03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-06호 개정 2021. 10. 2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-11호 개정 2022. 00. 00.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-00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법이라한다)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"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 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"방송사업자"라 한다)의 광고매출 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- 2. "방송광고 결합판매"(이하 "결합판매"라 한다)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"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"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

-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SBS를 말한다.
- 4. "결합판매사업자"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.
- 5. "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"(이하 "지원대상사업자"라 한다)란 법 제20 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 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- 6. "결합판매 매출액"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.
- 제3조(결합판매사업자)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하여야 하는 결합판매사업자로 본다.
 - 1. 한국방송공사와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
 - 2. 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
- 제4조(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) ① 법 제20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 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는 비율로 산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.
 - 1.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

- 2.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
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.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(%)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(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[별표 1]과 같다.
- 제5조(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) ①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

자별로 각각 산정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,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- ④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산정기 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[별표 2]와 같다.
- 제6조(결합판매 균등지원)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(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)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 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 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 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[별지 1]과 [별지 2]의 양식에 따라

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.
- 제9조(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[별표 1]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[별표 2]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 - 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매년 고시한다.
 - ② 당해연도의 [별표 1] 및 [별표 2]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잠정 적용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[별표 1] 및 [별표 2]와 제2항에 따라 잠정

적용한 [별표 1] 및 [별표 2]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.
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 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,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규제의 재검토) 방송통신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재검토기한) 방송통신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2012-52호, 2012.9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5년 미만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규모 특례) ①제5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이 발생한지 5년이 경 과하지 않은 지원대상사업자의 2012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 당 사업자의 2011년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2011년도 지상파방송광고 총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에 17.3%를 가중하여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되, 2017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.

부 칙<제2013-19호, 2013.11.22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4-8호, 2014.7.10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5-8호, 2015.7.31.>

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<제2015-21호, 2015.9.2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6-10호, 2016.11.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7-11호, 2017.11.6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8-13호, 2018.10.30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9-11호, 2019.10.31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0-6호, 2020.11.3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1-11호, 2021.10.20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2-00호, 2022.00.00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

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)	12.1326%
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㈜에스비에스엠앤씨)	9.1327%

[별표2]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

결합판매사업자	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결합판매 지원규모(%)			
		부산문화방송㈜	0.6170%			
		대구문화방송㈜	0.4570%			
		광주문화방송㈜	0.3763%			
	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	대전문화방송㈜	0.4132%			
		전주문화방송㈜	0.3788%			
		㈜엠비씨경남	0.6390%			
		제주문화방송㈜	0.4501%			
		울산문화방송㈜	0.3721%			
		춘천문화방 송 ㈜	0.4012%			
		㈜엠비씨강원영동	0.7299%			
		포항문화방송㈜	0.3269%			
		여수문화방송㈜	0.3002%			
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		㈜엠비씨충북	0.8148%			
지상파방송광고의		원주문화방송㈜	0.3360%			
판매를 대행하는 자		안동문화방송㈜	0.3081%			
		목포문화방송㈜	0.2964%			
		(재)CBS	1.7377%			
		(재)불교방송	0.5001%			
		(재)가톨릭평화방송	0.4306%			
		(재)극동방송	0.2062%			
	주 소 지사하	(재)원음방송	0.2339%			
	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	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	0.0535%			
	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0.0067%			
	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0.0126%			
		한국교육방송공사	1.4054%			
		㈜경인방송	0.1648%			
		㈜YTN라디오	0.1641%			

결합판매사업자	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결합판매 지원규모(%)			
		㈜케이엔엔	1.1469%			
		㈜티비씨	0.8937%			
		㈜광주방송	0.7472%			
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		㈜대전방송	0.6238%			
		㈜전주방송	0.4147%			
		방송사업자	㈜울산방송	0.4165%		
		㈜청주방송	0.4286%			
		㈜지원방송	0.5654%			
		㈜제주방송	0.4066%			
		오비에스경인티브이㈜	3.4893%			
	방송사업자	— , ,— o c ,— m	0.1070 /0			

[별지1]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

(단위: 원)

지상파방송사업자	1사분기		2사분기			3사분기			4사분기			충ե게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
합계													

[별지2]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

(단위: 원)

지원대상 사업자	1사분기		2사분기			3사분기			4사분기			하네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	비고
합계														

[※] 비고는 결합판매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명시한다.

[※] 복수의 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별로 결합판매 매출액을 구분한다.